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및 농기계수리센터와 농기계수리점을 활용하여 농기계 수리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농기계수리센터의 사업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농기계수리센터의 수리요원 및 장비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농기계 수리비 지원 금액 및 기준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근거를 규정함 (안 제6조)

3. 참고자료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부속품 대체, 정비, 그 밖의 수리 업무
2. 수리 시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
3.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의 부과징수
4. 농기계 119시스템 운영

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, 농기계 119시스템으로 지원 요청할 때에는 순회수리나 방문수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

순회수리는 도서지역·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.

제4조(수리요원 및 장비) ① 센터의 수리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농기계담당지도사, 기능직(기계직), 무기계약직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.
② 센터에는 농기계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.

제5조(수리비용 지원 등) ① 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한다.
②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

1.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

2.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

③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수리내역서 등)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의 수리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부품대금의 회수)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

제7조(사무의 위임)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농업
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<p>□ 농업기계화촉진법</p> <p>○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없음”